

# 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44,738,707	16,342,161
일반회계	537,565,843	16,126,975
특별회계	7,172,864	215,186
기타특별회계	7,172,864	215,186
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	1,448,000	43,440
동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878,502	56,355
자활기금특별회계	343,476	10,304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903,400	27,102
동해시주차장특별회계	2,599,486	77,98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,732,369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3,829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4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2.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경비
3.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4. 재해대책 및 복구비